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82호 (2015.5.28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81호, 2015. 5. 27.)를 아래와 같이 개정·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개정 사항

-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중 3. 다의 시행시기를 당초 "2015년 6월 1일"에서 "2015년 8월 1일"로 변경

붙임 : 개정고시문 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 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)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197 (2015.05.29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